

별첨1. 기관추천 특별공급(신영지웰 평택화양)안내문

I 공급개요 및 일정

- 주택명 : 신영지웰 평택화양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785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2개동 총 999세대
 - 84㎡A : 341세대, 84㎡B : 300세대, 84㎡C : 112세대, 84㎡D : 246세대
- 장애인(인천시) 특별공급 배정세대

주택형(㎡)	84A	84B	84C	84D	합계
세대수(예비)	3(15)	3(15)	1(5)	2(10)	9(45)

■ 공급일정

구분	예정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	2024.5. 23(목)예정	■ 당사 홈페이지
건본주택 개관	2024. 5월 중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번지
청약접수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건본주택 청약 가능(사전예약 필수)
당첨자발표일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무주택 구성원의 의미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III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사업주체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 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시 재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IV 위치도

